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3가단252239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## 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

담당변호사 임영민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11.

판결 선고 2024. 10. 3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9,606,195원 및 이에 대한 2023. 11. 14.부터 2024. 10. 30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87,906,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 1. 인정사실

가. C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는 2019. 7. 17. 사망하였고, 그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, 피고, D이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를 상속하였다가 2020. 6. 19. G, H에게 매도하고 2020. 6. 22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1992. 10. 29. 협의분할 상속을 받은 것인데, 위 매도시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되었고,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은 D과 피고가 사용하였다.

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2009.3.3.   | I은행<br>C | 60,000,000                 | 50,000,000                 | 2012.10.31. | 2항 대출금으로<br>대환   |
| 2 | 2012.10.30. | J보험<br>D | 300,000,000<br>264,000,000 | 219,854,862<br>200,624,495 | 2015.9.23.  | 3항 대출금으로<br>대환   |
| 3 | 2015.9.23.  | K보험<br>D | 525,600,000<br>124,800,000 | 438,000,000<br>96,000,000  | 2018.9.17.  | 4항 대출금으로<br>대환   |
| 4 | 2018.9.17.  | L D      | 1,028,300,000              | 791,000,000                | 2020.8.26.  | 이 사건 아파트<br>매도대금 |

다. D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789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3. 8. 18.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, D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유재산인데,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, D과 피고는 변제된 채무 중 각 실제 이용한 금액에 관한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각 부담채무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(1/3)을 초과하는 변제액에 관해서는 상호 구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,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187,906,905원[=(피고가 사용한 대출금 590,842,886원 - 피고가 별도로 변제한 27,122,171원) × 1/3]이고, D의 구상금 채무는 66,112,440원[=(D이 사용한 대출금 200,157,114원 - D이 별도로 변제한 1,819,794원) × 1/3]이므로,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위 187,906,905원에서 66,112,440원을 공제한

금액에서 D이 스스로 공제하는 추가 금액을 공제한 115,293,590원이라고 판단하여 '피고는 D에게 115,293,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7. 27.부터 2023. 8. 18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23. 9. 5. 확정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, D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유재산인데,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변제된 채무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(1/3)을 초과하는 변제액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고, 그 구상금의 액수가 187,906,90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187,906,90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7,906,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와 원고의 남편 M에 대하여 240,000,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구상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구상금 채권'이라 한다)을 반영하여 위 대여금을 150,000,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M은 2021. 6. 18.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(이하 '이 사건 차용증'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.

차용증

채권자 : 피고

채무자 : 원고, M

일금 일억오천만원(150,000,000원)

채무자는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상환 요구금액(이억사천만원) 중 위 금액으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아래일정과 금액에 의하여 피고의 N은행 계좌로 지급한다.

1) 2021년 8월 1.일까지 : 오천만원 (50,000,000원)

2) 2021년 12월 31.일까지 : 오천만원 (50,000,000원)

3) 2022년 12월 31.일까지 : 오천만원(50,000,000원)

2. 채무자는 위 1.에서 정한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금액을 모두 이행한다.

(잔여금액은 이역사천만원에서 기 상환완료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).

3. 채무자는 위 1.에서 정한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O(P)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, 채권자의 변제방법을 인정하고 이행한다.

4.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상환금액을 인정하며, 채권자는 변제기일까지 이역사천만원(240,000,000원)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지 않는다.

(단 차용금액을 기한 내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4. 내용은 취소한다.)

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액수가 약 187,000,000원에 이르는 점, 갑 제16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반영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90,000,000원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또한 피고는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50,000,000원을 3회에 걸쳐 50,000,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,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40,000,000원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50,000,000원 중 2021. 8. 1.까지 지급해야 할 50,000,000원, 2022. 12. 31.까지 지급해야 할 50,000,000원의 합계 100,000,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는 240,000,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50,000,000원을 공제한

19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.

원고와 M이 피고에게 15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, 그 중 50,000,000원은 2021. 8.

1.까지, 50,000,000원은 2021. 12. 31.까지, 50,000,000원은 2022. 12. 31.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, 원고와 M이 위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40,000,000원에서 기 상환완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.

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, 을 제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피고 명의의 Q 조합계좌((계좌번호 1 생략), 이하 '이 사건 계좌'라 한다)에서 2021. 7. 30. 50,000,000원, 2022. 12. 30. 50,000,000원이 피고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, 이 사건 계좌는 피고 명의의 경남 사천시 R 대 2,808m<sup>2</sup>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인 점, 이 사건 토지는 M이 S로부터 매수하였으나,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M과 원고가 사용하여 왔던 점, 피고는 2021. 7. 29.과 2021. 12. 27. 각 M에게 50,000,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, M이 2021. 7. 30.과 2022. 12. 30. 각 5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던 점, 원고와 M, 피고는 2021. 6. 30. 합의약정서(이하 '이 사건 합의약정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는데,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따르면, 피고는 2023. 6. 30.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M과 원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, M과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고,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가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은 M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M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M이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, 그렇다면 M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21. 7. 30. 50,000,000원, 2022. 12. 30. 50,000,000원을 각 이체한 것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원고와 M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나아가 피고는, ①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으로 오픈한 T 부산범일로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대출금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으므로, 위 경제적 이익을 원고의 구상금 청구금액에 10,000,000원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하며, ② 원고는 2023. 10. 이후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, 원고가 미납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가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은 M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을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24. 9. 10. 기준 이 사건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연체이자가 28,300,70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28,300,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,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서 위 대출금 이자 28,300,705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159,606,195원(=187,906,900원 - 28,300,705원)이 남게 된다(피고는 향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#### 4. 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,606,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. 11. 14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10. 30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고지은**